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14
------------	------

발의연월일 : 2017. 9. 29.

발의자 : 박홍근 · 전현희 · 고용진
박광온 · 정재호 · 정인화
서형수 · 송기현 · 홍익표
김상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사선과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한국원자력의학원과 달리 별도 세부사업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으며 시설·조직, 원장 선임 및 사업계획 수립·예산·회계 등 행정업무도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독립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정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독립된 기관 신설에 따른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제13조의4로 하고,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부설기관) 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학원의 부설기관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설기관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3(부설기관) 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u>
<u>제13조의3(의학원의 사업) (생략)</u>	<u>제13조의4(의학원의 사업) (현행 제13조의3과 같음)</u>